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을 구축하여 2018년 3월 현재 서술형 237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5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01

Q | 의사는 진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진료해야 하나요?

A | 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한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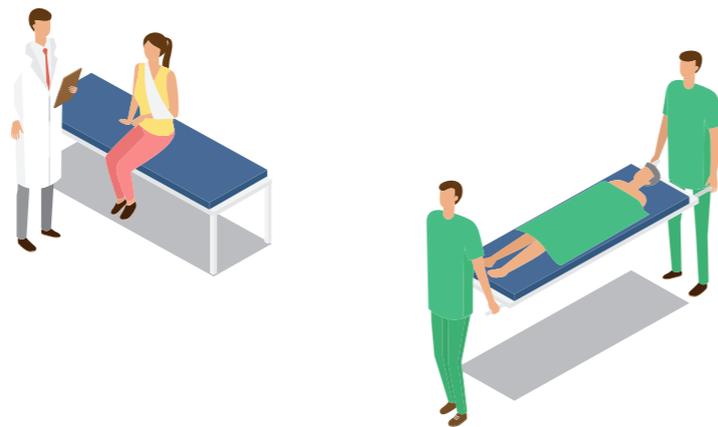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 개월



02

Q | 응급환자 상태가 위중하여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응급의료종사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은 후 응급医료를 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医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이러한 설명 및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03

Q | 병원은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나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한 경우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개월

●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04

Q | 응급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국가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등을 통해 노숙자 및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비의 일정 부분 부담해 주고 있으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여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대지급 신청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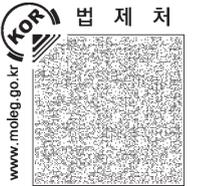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1. 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2.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
3.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 대지급제도 이용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대지급의 범위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이송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05

Q | 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진료비 부담 의무자 즉 상환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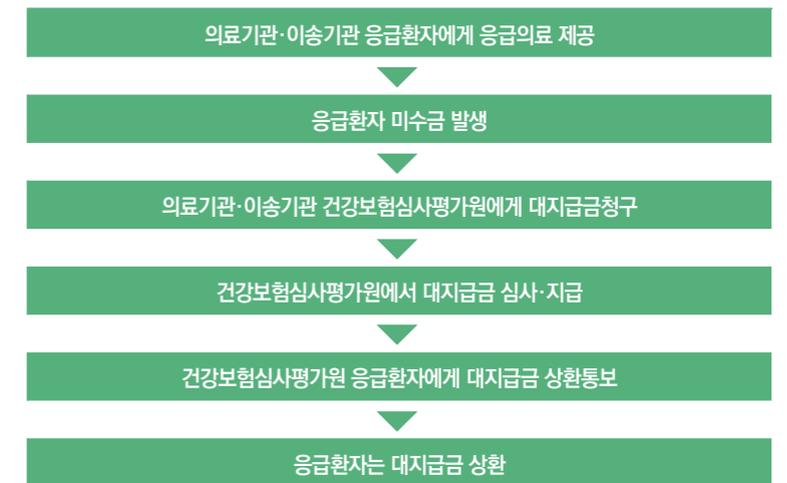
● 상환의무자란?

상환의무자는 바로 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를 의미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미수금 상환 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상환의무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상환의무 위반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06

Q |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제가 찢은 옷이 고가의 명품이었는데, 제게 책임이 있을까요?

A |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